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0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정태호·이기헌·이연희

한정애 • 박용갑 • 조정식

이해식 • 김유덕 • 박홍근
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연부연납 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일시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임. 2021. 12. 21.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, 2022. 12. 31. 개정으로는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.

그런데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,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, 또한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있음.

이에 위 개정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거나 개정법 시행 후 연부연 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하려는 것 임(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및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의 제목 "(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"를 "(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1조제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혀 행

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<신 설>

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(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 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연부연납기간에 관하여는 제71조제 2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<단서 신설>

개 정 안

법률 제1859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(연부연납에 관한 적용 례) 제71조제2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연부연납 기간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 법률 제19195호 상속세 및

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(연부연납 기간에 관한 경

<u>과조치 등)</u> -----

--. 다만, 이 법 시행 전에 2천 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상 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연부연 납 기간 중에 있는 분 또는 이 법 시행 이후 2천억원 미만의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분에 대해서는 제71 조제2항1호가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.